# 2023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어린이집 배포용-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차 례 | CONTENTS

## Ⅰ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추진배경 및 현황 ····· 6
2. 사업 운영체계 ····· 7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11

## Ⅱ

## 부모모니터링 지표

1. 부모모니터링 지표 ····· 16

## Ⅲ

##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23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주요 변경사항 ····· 93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CHAPTER

# I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추진배경 및 현황
2. 사업 운영체계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Ⅰ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 1. 추진배경 및 현황

❑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추진('13년~)

- 보육서비스 개선대책('12.3) 일환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설치·운영 포함,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마련('13.6)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사업 운영체계

❑ 사업 운영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 교육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 시·도 단위로 시행

  ※ 시·군·구 단위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와 협력하여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도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 선정 및 관리 등 총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직접 수행 및 지원 등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부모모니터링 사업수행인력(겸직 가능)을 배치하고, 계약직 1명(9개월 내외)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 체계 마련

- 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모니터링 지표 관리, 운영매뉴얼 제작,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및 상담, 사업실적 관리 등에 대해 연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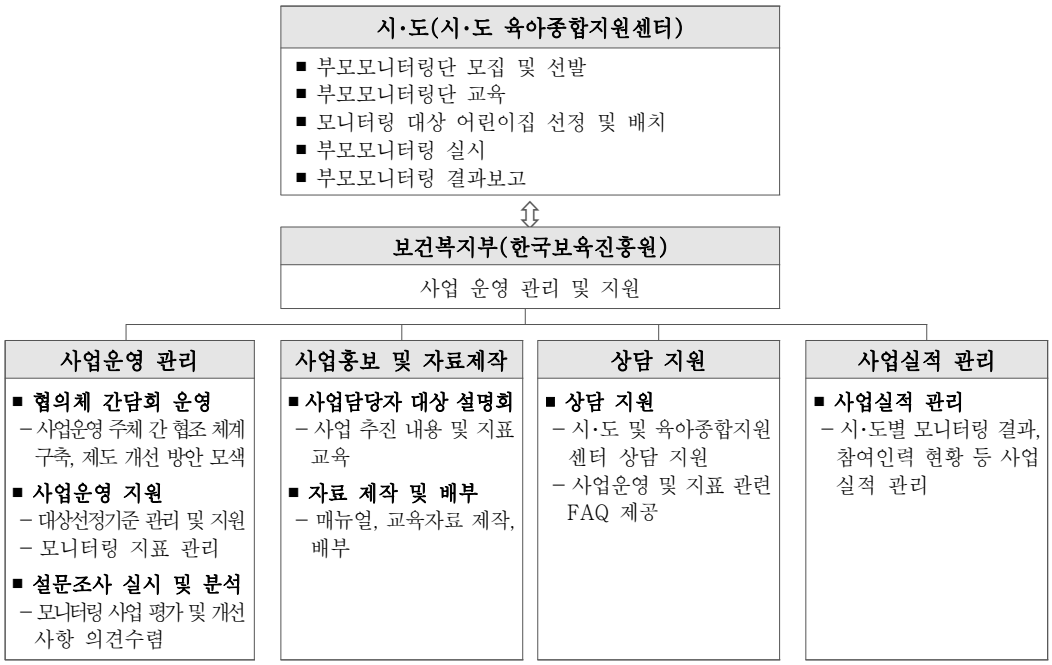

❑ 모니터링 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2022년 | 2023년 |
|---|---|
| ■ 모니터링 대상<br>•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br>1)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포함)<br>2)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br>3)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제외)<br>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br>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br>※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br>※최근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 미실시 | ■ 모니터링(컨설팅) 대상<br>•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br>1)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br>2)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br>3)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br>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br>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br>※ 부모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예산 등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 |
| ■ 대상 제외 기준<br>• 열린어린이집(어린이집 희망 시 가능)<br>※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기준 선정 시 관할 열린어린이집은 제외<br>※ 하반기 열린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모니터링 제외대상 다수 발생 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차년도 제외대상에 포함 가능<br>•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br>※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 ■ 대상 제외 기준<br>•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 ❑ 사업운영 절차

| 구분 | 내용 |
|---|---|
| 부모모니터링단<br>모집, 구성, 교육 | • 부모모니터링단(전문가) 모집 공고 및 선정<br>*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아 부모 중에서 구성<br>•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
| 모니터링단원 배치 | •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단원(컨설팅) 파견 일정 계획 수립<br>• 부모모니터링 단원(전문가) 어린이집 배치 |
| 모니터링 및<br>컨설팅 실시 |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br>• **(방문일정 협의)** 모니터링단원은 대표자나 원장 등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변경 금지<br>※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br>• **(모니터링 시간)** 1일 2개소 방문 가능하며, 급·간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컨설팅) 실시<br>※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br>• **(모니터링 및 컨설팅)**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 제공<br>– 지표별 항목 미흡사항 등에 대해 당일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br>– 부모모니터링 거부·방해·기피 등의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br>• **(모니터링 결과 안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는 당일 서면으로 안내<br>– 전문가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한 후, 어린이집 및 재원아 부모와 서명하고 종료<br>※ 어린이집 의견은 지자체 제출 시 작성(어린이집 배부 불필요)<br>※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재원 영유아 전체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
| 결과보고서<br>작성 및 보고 |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링 실시 후 전문가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서식참조) 사본을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지자체에 3일 이내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br>–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br>–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 교육 및 간담회 | • 모니터링 사업 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

❑ 2023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추진 내용

● **(재원아 부모 참여를 통한 상시적 자율 관리 강화)** 원장과 재원아 부모가 함께 모니터링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영유아 중심으로 동반자적 관계 형성

– **건강·안전·급식·위생 관련 모니터링 지표 중심으로 컨설팅(전문가 단원)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 **(운영체계) 어린이집과 재원아 부모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단(전문가)이 컨설팅 제공**

> ▸ **(현행) 자체모니터링(재원아부모+어린이집), 현장방문모니터링(부모+전문가 단원)**
> ▸ **(개선) 부모모니터링*(재원아 부모 + 어린이집 + 전문가 단원(컨설팅제공))**
>
> * ① 재원아 부모 ② 어린이집 원장 ③ 전문가 단원
> ※ (실시주기) ① + ② + ③ → 연 1회, ① + ② → 연 1회 이상

– **(모니터링 지표) 부모모니터링(15항목)**

| 구분 | 현 행 | 개 선 |
|---|---|---|
| 주체 | • 현장방문 모니터링<br>– (부모단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br>– (전문가 단원)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br>• 자체모니터링 재원 영유아 부모 | • 부모모니터링(통합)<br>– (부모)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br>*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 중에서 구성<br>– (전문가 단원)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 위촉 |
| 대상 | 관내 어린이집(50%), 열린어린이집 제외 | 모든 어린이집 |
| 방법 | • 현장방문 모니터링<br>– 부모모니터링단원(부모, 전문가, 1:1)이 어린이집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br>• 자체모니터링<br>– 재원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직원(원장)이 참여하여 모니터링 실시 | • 부모모니터링(통합)<br>재원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니터링 실시+전문가 단원 파견(컨설팅 제공) |
| 지표 | • 현장방문모니터링 15항목<br>• 자체모니터링 10항목 | • 부모모니터링(통합)<br>건강·안전·급식·위생 관련 15항목 |
| 실시 주기 | • 현장방문 모니터링<br>– 관내 어린이집 50% 선정, 2년 1회 내외 실시<br>• 자체모니터링 – 매년 1회 이상<br>* 최소 1회는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이전 실시 | • 부모모니터링(통합)<br>– 모든 어린이집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br>– 전문가 단원 참여 모니터링은 연 1회 실시 (예산 및 우선 실시 기준 고려) |

##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단은 재원아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재원아 부모는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구성하고, 전문가 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전문가 단원은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의거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지역특성상 또는 사업운영 중 해촉자 발생하여 공모 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전문가 단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선정 기준

| 구분 | | 선정요건 |
|---|---|---|
| 전문가 | 보육 |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br>•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br>※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br>•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
| | 보건 |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br>•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 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 부모모니터링단원 교육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개선 내용, 지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단원(전문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상반기: 현장 및 이론교육, 하반기: 보수교육) 다음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컨설팅 정보 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 시·군·구 단위로 교육을 운영할 경우, 모니터링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와 협력하여 실시하여야 함

※ 단 사업 조기종료 지자체는 사업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조정 가능

-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CHAPTER

# II

# 부모모니터링 지표

1. 부모모니터링 지표

#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Ⅱ 부모모니터링 지표

## 1. 부모모니터링 지표

### 가. 부모모니터링 지표 구성

❑ 부모모니터링 지표 : 4영역 15개 지표

-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를 위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의 4개 영역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1. 건강관리(3) | 2. 안전관리(4) | 3. 급식관리(4) | 4. 위생관리(4) |
|---|---|---|---|
| 1. 감염병 예방·관리<br>2. 비상약품 관리<br>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 1. 실내외 시설 관리<br>2. 등·하원 인계과정<br>3. 차량 안전관리<br>4. 아동권리존중 실천 및 안내 |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br>2. 식품 알레르기 관리<br>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br>4. 식자재 보관규정 |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br>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 등 위생 관리<br>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br>4. 개별 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 |

❑ 부모모니터링 지표 세부내용

| 영역 | 내 용 |
|---|---|
| 영역1<br>건강관리(3) |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br>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br>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br>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
| |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한다.<br>① 비상약품을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한다.<br>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한다. |
| | 1-3.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적절하게 지원한다.<br>①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연계한다.<br>② 영유아에게 해열제, 감기약 등 투약할 때 부모가 의뢰한 투약의뢰서에 따라 투약하고 투약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한다. |

| 영역 | 내 용 |
|---|---|
| 영역2<br><br>안전<br>관리<br>(4) |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br>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을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br>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 |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br>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를 구비한다.<br>② 영유아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다른 성인에게 인계 할 때는 보호자에게 확인(전화 등) 후 인계한다. |
| |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br>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br>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
| |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br>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br>② 가정에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과 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한다. |
| 영역3<br><br>급식<br>관리<br>(4) | 3-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충분히 제공하며,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한다.<br>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br>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br>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한다.<br>④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한다. |
| |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br>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br>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 |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br>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br>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

| 영역 | 내 용 |
| --- | --- |
| 영역3<br><br>급식<br>관리<br>(4) |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br>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별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br>②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br>③ 소비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
| 영역4<br><br>위생<br>관리<br>(4) |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한다.<br>① 조리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br>② 조리도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 |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br>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br>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
| |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br>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br>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
| | 4-4. 개별 영유아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개별 침구, 개별 칫솔, 양치컵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소독한다.<br>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br>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 나. 부모모니터링 지표 세부기준

### 영역 1 건강관리

영유아기는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 질병 등에 취약하므로 보건 위생 측면에서의 청결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를 사려 깊게 파악하여 심신을 돌보아주고 투약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비상약품의 유효기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영 역 | 지 표 | 확인방법 | | | |
|---|---|---|---|---|---|
| | | 기록 | 관찰 | 면담 | 확인자료 |
| 1. 건강관리 (3) |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 ○ | ○ | - |
| |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한다. | | ○ | | - |
| | 1-3.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적절하게 지원한다. | ○ | ○ | ○ |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기록 |

| 1-1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

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 확인방법 | 관찰, 면담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마련하여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도 안내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1]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2]의 경우에는 보건소에도 신고해야함

1) (시군구 보고 대상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2)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보고 받은 시·군·구에서는 보건소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연락하여 식품위생법 제86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며,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또는 http://idolbom.go.kr)

- 단, 해당 감염병(B형간염 등)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자라 하더라도 등원 중단 및 격리 대상이 아님
-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대상이 아님
- 해당 질환자가 등원 제한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1-1-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함 [관찰, 면담]

- 어린이집 운영 시 감염병 관리수칙 준수 여부
- 감염병 관리수칙 숙지 여부(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를 등원시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원장이나 교사 자신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1-1-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함 [면담]

- 감염병 예방·관리 내용의 부모 안내 여부 확인(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감염병 예방·관리 내용을 부모에게 정기적(분기별)으로 안내하는가?
  - 부모에게 어떤 내용(감염병의 증상 및 예방방법,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는가?
  - 부모에게 어떤 방법(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는가?

### 1-1-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함 [관찰, 면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여부 확인(관찰, 원장 및 보육교사 1인 면담)
  -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 감염 예방 관련 안내문을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함
  - 손 세척제, 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함
  -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여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함
    -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영아반 놀잇감 등 교재교구, 탁자, 손잡이 등)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면담)
  - 원장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 교육 허용함
  -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식사 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며

식사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영유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함
-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영유아에 대해 출근·등원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여 출입토록 관리함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는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함)

•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가? (면담)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37.5℃이상의 발열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 재원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등원 시, 등원 후) 건강 체크 시 증상을 확인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면담)

**컨설팅 TIP**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필수기재사항 포함)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함을 안내
  - 필수기재사항: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영유아 및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 외에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증상,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방역조치 사항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참고

■ 감염성(전염성) 질환
- 매일 등·하원 시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 다음의 증상을 유의하여 본다.(평소와 다른 행동, 기침, 발열, 식욕저하, 충혈, 설사, 잠만 자려고 함, 발진, 구토)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영유아의 경우(지속적인 심한 고열, 붉은 반점, 수포성 발진, 기침, 구토, 곱이 섞인 설사, 결막염) 즉시 격리하고 부모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제공한다.

☑ 격리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영유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서 부모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가능한 아픈 영유아와 건강한 영유아를 격리하여 보호한다.
- 전담 보육교직원을 두어 아픈 영유아를 돌본다.
- 아픈 영유아가 가지고 놀 장난감은 구별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소독한다.
-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
어린이집에 있어도 될 정도의 상태라면 다음의 사항을 지키도록 합니다.
- 영유아가 자주 손을 씻게 도와준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자주 손을 씻는다.
- 아픈 영유아와 함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놀이시설 및 장난감을 자주 소독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성(전염성) 질환의 증상

| 종류 | 증상 |
|---|---|
| 수족구 | •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으로 시작,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서 발생,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 궤양으로 발전하며,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손바닥, 발바닥에서 나타남<br>• 잠복기 수일~수주 |
| 독감 | • 38℃ 이상의 전신 증상(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br>• 잠복기 수일~수주 |
| 수두 | • 발진 발생 1~2일 전부터 권태감, 미열 동반,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의 순으로 진행<br>• 발진은 몸통, 두통, 얼굴에 발생하고 매우 가려움<br>• 잠복기 수일~수주 |
| 볼거리<br>(유행성이하선염) | •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 증상을 보이다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등에 염증 발생<br>• 잠복기 수일~수주 |
| 홍역 |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 이후 홍반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으로 퍼짐<br>• 발진은 3일 이상 지속<br>• 잠복기 수일~수주 |
| 뇌염 | •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저하, 혼미, 시력저하, 간질, 발작 등 |

■ 격리(등원 제한)가 필요한 경우

- 발열과 함께 구역질, 구토 등이 있을 때
- 열과 함께 몸에 발진이 돋았을 때
- 설사(두 번 이상 변을 보았다거나 평소 배변습관에서 변화를 보인 경우)를 하는 경우
- 최근 24시간 내 두 번 이상의 구토가 있었을 경우
- 피부나 눈에 황달이 관찰된 경우
- 영유아가 계속 보채고 달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 경우

■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단순 감기,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중이염, 단지 열만 나는 경우, 제5병(감염홍반), B형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분비물이 없는 충혈, 아구창

■ 격리(등원 제한)가 필요한 기간

| 종류 | 증상 | 잠복기간 | 격리 기간 |
|---|---|---|---|
| 홍역 | 발열, 재채기, 결막염 발진 | 9~13일 |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br>→ 발진 후 약 5일간 |
| 수두 | 발열, 발진, 물집이 생김 | 10~21일 |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br>→ 발진 후 약 7일간 |
| 유행성이하선염<br>(볼거리) |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 7~21일 | 귀밑 부기가 다 빠질 때까지<br>→ 발진 후 약 5일간 |
| 풍진 | 가벼운 감기 같은 증세, 발열, 발진 | 10~21일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br>→ 대개 발진 후 5일간 |
| 백일해 | 열은 없고 밤에 기침이 심함 | 7~14일 | 특유의 기침이 없어질 때까지<br>→ 발병 약 3~4주 |
| 유행성<br>감기 | 발열, 기침 목이 아픔, 뼈마디 아픔 | 1~3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 유행성<br>결막염 | 눈이 붓고 흰자위가 충혈, 눈꼽 多 | 7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 농가진 | 얼굴이나 수족에 쌀알 크기부터 대두 크기의 발진, 수포가 생김 | 2~5일 | 염증기가 지나 환부치료, 포대를 하고부터 |
| 수족구병 | 38도 정도의 고열, 1~2일간 입속,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가 생김 | 3~6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 전염성<br>설사증 | 설사의 횟수가 많고 변이 물 같고 열이 나며 감기증상을 동반함 | 2~4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 감염(A형) | 식욕부진, 두통, 열, 황달, 관절통 | 10~15일 |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 디프테리아 | 미열, 인후염, 기침, 쉰 목소리, 두통, 편도선 비대, 회색반점 | 2~4일 | 배양검사가 2회 이상 음성이 나올 때까지 |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부모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도록 조치
- 완치 확진소견서와 함께 등원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1판]

〈감염예방 관리〉

■ 감염병 예방 안내

• 원장은 영유아와 보호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내

[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권고) ] * 질병청, 4.25.(월) 개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안내방식) 보육활동 시 교육, 게시판, 가정통신문, SNS 등 활용

■ 마스크 착용 기준

• (실내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는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 및 외부인 등 접촉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투명마스크 포함),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실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개정, '22.5.2.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임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음(질병관리청, '20.)
– 다만, 영유아가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또한 영유아에게 의심증상이 있거나 영유아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그 외 모든 외부인은 반드시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하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환경·위생 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세척제(비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할 것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실시
– 일 3회* 이상 환기하되, 밀집도가 높은 경우 추가 실시
* 영유아 등원 전, 보육시간 중 및 하원 후 환기를 기본으로 하되 실외 미세먼지 농도 등 외부 환경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가능

- 냉난방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람세기를 낮추어,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공기청정기 가동시 공기순환을 통해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터 관리와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방역(소독) 관리**

• 어린이집은 개인물품, 공용공간, 교재교구, 기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가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소독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며 청소 및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 다만, 지자체와 협의 하에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시행하지 않고 어린이집 자체 소독도 가능
  - 소독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게시물 활용

■ **접촉의 최소화**

• 원장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
  - 외부강사 등 외부인 출입은 「외부인 출입관리」에 따름
•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 허용
  - 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진행
  - 실외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비말생성 환경 등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씻기, 가능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식당시설, 식당)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설치

## 〈등원·출입 관리〉

■ **등원·출근시**

• 원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등원·출근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하고, 개인위생을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하도록 함
  - 발열검사는 1일 2회 이상 실시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

○ 실시대상 : 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및 외부인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ⅰ)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ⅱ)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및 통학차량 이용시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ⅰ)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 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사용
ⅱ)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콧물, 기침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94 이상) 착용
ⅱ)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등원·출근중단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이거나 격리 권고 중인(질병청 격리 기준에 따름)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해당 기간 동안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어린이집에 연락 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등원(출근) 중단
  - 확진 후 격리해제(완치)된 경우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에는 등원 및 출근 가능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①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다.
    ②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한다.
    ③ 전염성이 없다.

> 참고 다만, 3월 1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 상기 사유들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참고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미등원한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 특례
> ○ 원장은 불출석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영유아 및 보호자와 주 1회 이상 면담하여(내원, 유선) 재원의사 및 아동의 건강상태 확인

■ 외부인 출입 관리

-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단순 방문 자제하고 원장 승인 하에 출입
  * 외부인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예. 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를 제외한자를 의미
  - 다만, 중앙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어린이집 평가, 지도점검, 공익사업 수행 등의 행정상 필요인력 방문에 적극 협조
  - 모든 외부인은 반드시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하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외부인 출입시 "외부인 출입에 따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참고 외부인 출입에 따른 방역수칙
> ○ 외부인 출입시 가급적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과 동선 분리하여 직접 접촉 최소화
> ○ 불가피하게 영유아 혹은 어린이집 종사자와 접촉하여야 하는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등원·출입 관리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 외부인 방문 종료 후에는 즉각 어린이집 내부 소독할 것

##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 **등원·출근 전**

•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생시 등원·출근 중단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상담, 진단검사 실시

■ **등원·출근 시**

• 원장의 발열검사 과정에서 영유아 혹은 어린이집 종사자에게서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며, 영유아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귀가 조치함

■ **등원·출근 후**

: 어린이집 내 의심증상자 발견 시 원장은 아래 순서대로 조치함

① 귀가 조치 및 진단검사 안내
  – 보육교직원의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즉시 귀가 조치, 진단검사 실시 안내 및 관리
  –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하고 진단검사 안내 및 관리
    ·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확보된 안전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동석하여 대기
    * 어린이집 내 격리공간은 1인실 원칙, 다만 1인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KF94 이상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 위생 철저히 준수

② 의심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사용공간을 소독(알코올, 락스 등)

③ 추가 의심증상자(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등) 유무 확인

##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① (보고) 기초지자체 보고
  – 원장은 확진자 발생사실을 관할 기초지자체로 즉시 보고하고,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확진자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 시행

② (자체조사) 접촉자 파악 및 안내
  – 접촉자 관리는 원내 자율관리로 전환
  – <u>다만,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u>
    *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자가진단검사키트 포함)

> 참고 원장의 PCR 진단검사 의뢰
> ○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 고위험기저질환자의 경우 원장의 확인서를 소지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 다만, 3월 1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 (후속조치) 어린이집 내 검사결과 등 모니터링 등

##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휴원 기준>

■ 일시적 이용제한 기준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이용제한 기간과 범위는 소독과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자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이용제한 설정 구역에서 보육활동 불가

■ 휴원 기준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조하에 관할 어린이집 휴원여부 결정
- 어린이집 휴원시에도 긴급보육은 실시됨
  * 긴급보육시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 금지이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예외적 허용

## <재유행 시 신속대응>

■ 재유행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어린이집별 자체 방역관리 강화 방안 사전 준비 및 업무연속성 계획(BCP) 등 지속관리

- (방역관리) 소독환기 철저, 거리두기 강화, 특별활동 및 집단행사교육, 외부활동 자제 등 상황에 따라 자율적 신속 대응
- (BCP) 원내 종사자 다수 감염 등 위기상황에서도 핵심업무인 보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BCP 등 비상대응체계 지속 관리
  * 기타 강화된 방역수칙, 포스터, BCP 가이드라인 등의 참고자료는 이전 「어린이집용 코로나 대응지침」,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csia.or.kr) 게시물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_____ 이름_____(서명)

| 체크리스트 | | 해당란에 ○ 표시 | | 비고 |
|---|---|---|---|---|
| | | 예 | 아니오 | |
| **협력체계(1)** | | | | |
| · 비상연락체계 (관할 보건소-관할 시·군·구 및 시·도-의료기관) |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 | | |
| |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 | | |
| **인력 배치 및 관리(4)** | | | | |
| · 감염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 | | | |
|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 | | | |
| · 격리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위생 및 방역 관리(4)** | | | | |
| ·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지침에 따라 매일 소독하고 있는가 | | | | |
| · 어린이집은 수시로 환기(일 3회 이상)를 하고 있는가 | | | | |
| · 손세척제와 휴지 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 | | | | |
| **기타 특이사항** | | | | |
| *(자유기술)* | | | |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1판(보건복지부, 2022.5.23.)

| 1-2 |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한다. |
|---|---|

① 비상약품을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한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약품(의약품 반드시 포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이외에 외부활동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으며,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실제 가지고 나가는 등 활용해야 함. 또한 어린이집에 구비된 모든 약품에는 사용(유효)기한을 표기하고, 사용(유효)기한 내로 관리해야 함

### 1-2-① 비상약품을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함 [관찰]

● 비상약품의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 구비 여부

•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로 갖추어야 할 내용물

| 비상약품(외용제) | 간이 의료기구 |
|---|---|
|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체온계 |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비상약품의 종류는 예시이며, 이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비상약품의 종류는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 가능

### 1-2-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관찰]

● 어린이집 내 모든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한 준수여부 확인

– 교사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약품도 유효기간을 관리해야 함. 단, 교사가 개인적으로 소지하여 사용하는 약품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1-3 |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적절하게 지원한다. |
|---|---|

①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연계한다.
② 영유아에게 해열제, 감기약 등 투약할 때 부모가 의뢰한 투약의뢰서에 따라 투약하고 투약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한다.

| 확인방법 | 기록, 관찰, 면담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해야 하며,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함. 또한 투약한 내용은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해야 함

□ 근거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서식Ⅱ-4>에 의한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문자, SNS 등)하고 투약요청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유효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함

### 1-3-①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연계함 [기록, 면담]

-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지원 여부 확인
  -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응급상황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모든 부모로부터 응급처치 동의서(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받고 있는가?
  - 비상연락체계는 마련되어 있는가?
- 응급처치 동의서(부모동의 및 조사서)
  - 기재사항 : ❶ 보호자 서명, ❷ 응급 시 이송 희망하는 병원명

### 1-3-② 부모가 의뢰한 투약의뢰서에 따라 투약하고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함 [기록, 관찰]

- 투약의뢰 관련 기록(※ 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투약하는 약의 종류 ❷ 용량 ❸ 시간(횟수) ❹ 의뢰자명
  - 투약의뢰서 문서양식, 알림장(대화수첩), 문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등 사용 가능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른 투약 실시 여부, 약의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 준수 여부 확인
  - 모니터링 당일 투약하는 영유아가 없어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주일 간 투약의뢰 기록 확인(투약이 이루어진 1개반 선정)
- 투약보고 관련 기록 유무 확인(※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투약 여부, ❷ 투약자(확인)

**컨설팅 TIP**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어린이집 내 비상약품은 반드시 의약품을 포함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산책 등 외부활동 시 지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집 내 비상약품 및 개인약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손이 닿는 경우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도록 안내

참고

[안전사고 대처법]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 하거나 더 불안해 할 수 있음
  – 필요 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함
•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 부모에게 연락
•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 사고보고서 작성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물에 빠졌을 때, 심한 화상, 전기 손상, 마비환자, 중독환자, 심장마비, 심장 질환이나 흉통, 의식이 없는 경우, 심한 출혈,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경련환자 등
    ※ 어린이집 원장이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영유아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56조)

■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

• 모든 보육교직원은 20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소아 심폐소생술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함
• 응급처치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확인가능
• 보육교직원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모바일 앱(응급의료정보 제공, E-GEN)을 통해 어린이집 인근 AED 위치 확인 필요
• 보육교직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를 준비함
  – 구급상자에는 응급전화번호, 약품의 사용방법 등을 부착함
•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절차 과정 목록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함
• 야외활동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함
•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함

■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 곁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당황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의 침착한 태도가 중요
- 입소 시 의무적으로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
- 응급처치 전·후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개인보호장비 이용
-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응급처치 시행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교사의 역할 분담 숙지

☑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환자의 수

■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 사고유형 | 응급처치 |
|---|---|
| 찢어짐 | • 혈액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방용 위생장갑 혹은 의료용 장갑 착용 권고<br>• 생리식염수로 씻어주거나 수도를 틀어 상처의 위에서 아래로 수돗물이 흐르게 하여 씻어주기<br>• 멸균 거즈나 깨끗한 붕대 혹은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누르면서 지혈<br>•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방문<br>※ 병원으로 가야해요<br>–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br>– 부상부위에서 악취나 고름이 날 때<br>–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 |
| 타박상 | • 타박상을 입은 후 20분간 냉찜질을 하고 탄력붕대를 이용하여 고정<br>• 찬물찜질이나 얼음찜질을 부상부위에 10~15분 정도 시행<br>•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둠<br>※ 병원으로 가야해요<br>– 멍이 심하고 부상부위에 변형이 있을 때, 관절부위의 통증이 있는 경우 |
| 골절 | • 절대 영유아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뼈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기<br>• 출혈이 동반될 경우 거즈 혹은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 뒤 붕대로 감아 지혈<br>• 부상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부상 부위를 움직일 수 없으면 골절의 가능성이 높음<br>•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으로 고정한 뒤 병원 이송<br>• 어깨관절, 무릎관절, 엉덩이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골절의 가능성이 크므로 부상 부위를 고정하고 바로 병원이동 |
| 화상 | • 화기가 남아있는 옷은 빠르게 벗기거나 가위로 자르는 등 제거<br>• 차가운 흐르는 물로, 부드러운 수압으로 20분 이내로 씻기<br>• 화상 부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차가운 물에 적신 깨끗한 천이나 멸균거즈 등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상태로 병원 방문<br>• 화상은 부상 초기보다 다음날 상처가 더 깊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처를 확인 |

*이 외 유형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상유형별 예방 및 대응, 4~39쪽 참고

* 출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과정(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2)
부상 유형별 예방 및 대응(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1)

## 영역 2 안전관리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 및 설비, 놀잇감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영 역 | 지 표 | 확인방법 | | | |
|---|---|---|---|---|---|
| | | 기록 | 관찰 | 면담 | 확인자료 |
| 2. 안전관리 (4) |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 ○ | | - |
| |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 | ○ | ○ | 귀가동의서 |
| |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 | ○ | ○ | 차량안전수칙 |
| |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 | ○ | - |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을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시설 및 설비는 위험요인 없이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전선, 세면대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수 등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또한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은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요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실내외 놀잇감은 파손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재질이 유해하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특히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 내 모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1**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2-1-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을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의 위험요소 관리**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모든 출입문(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모든 출입문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음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 이하인 창문(2층 이상)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장, 바닥, 벽면 등에 균열이 없으며, 날카로운 못 등의 돌출 등이 없음
  -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설치되어 있음
  - 계단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의 위험요소 관리**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선반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함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온열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돌출형 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안전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에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음
  - 블라인드 줄, 샤워기 줄 등은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음
  -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공동놀이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고정식 미끄럼틀, 볼풀장 등)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음
  - 세면대의 수도꼭지 등에 파손된 곳이 없고 표면은 거칠지 않고 매끄러움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은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 옥외놀이터의 바닥면은 평평하며, 웅덩이, 요철 등이 없음
- 옥외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함
-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 전선줄 등)

-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음
- 전선줄 등은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선풍기 등을 벽면에 설치한 경우, 전선이 벽면에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 관리**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 정수기에서 뜨거운 온수가 나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 관리**

- 원장실, 교사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음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 어린이집 구조 상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함

● **실내외 놀잇감 및 놀잇감 보관함(바구니) 관리**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는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 있지 않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이동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 2-1-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관찰]

-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 관리
  -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사용하는지 확인
  - 영아(만 0~1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없도록 관리하는지 확인

■ **위험한 물건의 예**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사물용 소독제,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침핀,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약품(비상약품, 실외활동용 비상 약품,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영아(만 0,1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 직경 3.5㎝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전기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 출처 :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

### 컨설팅 TIP

- 현관문에 개폐장치가 있으나 열려 있는 경우, 항상 잠가 놓도록 안내
- 모든 출입문의 범위는 보육실 뿐 아니라 실내 공동놀이실, 화장실, 현관 중간문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모든 공간이 포함됨을 안내
-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막, 문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과 전반동안 출입문이 열려 있지 않도록 안내
- 위험성 있는 놀이 및 활동자료 제공 시 영유아에게 사용법 및 용도를 지도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상황을 주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2-2 |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를 구비한다.
② 영유아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다른 성인에게 인계 할 때는 보호자에게 확인(전화 등) 후 인계한다.

| 확인방법 | 기록, 관찰, 면담 |
|---|---|

■ 지표설명 ■

영유아가 귀가할 때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예 : 미아, 유괴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함. 따라서 영유아의 등·하원 시 반드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인계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귀가동의서에 따라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를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함

**2-2-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를 구비함 [기록]**

- 귀가동의서* 구비 여부 및 내용 확인(※ 필수기재사항 포함 유무 확인)
  * <부모동의 및 조사서> 내에 '귀가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비한 것으로 봄
  - 필수기재사항 : ❶ 영유아의 이름 ❷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❸ 관계 및 연락처 ❹ 보호자의 서명

**2-2-② 영유아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다른 성인에게 인계 시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함 [관찰, 면담]**

-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 확인
  - 등·하원 시 모든 영유아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지 확인
  - 등·하원 인계과정이 관찰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계과정에 대한 절차를 면담으로 확인(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 보호자가 영유아를 혼자 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가?
  - 귀가동의서에 명시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2-3 |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
|---|---|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
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 확인방법 | 관찰, 면담 |
|---|---|

■ 지표설명 ■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와 교사는 개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차량 운행 시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3-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함 [관찰, 면담]**

- **모든 통학차량의 차량안전 설비 구비 여부 및 안전수칙 게시확인**

(소화기 구비 및 관리)

–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의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및 사용방법 숙지 여부)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숙지 여부(차량운전자 및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 1인 면담)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구비 및 관리)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함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Ⅰ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단,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W3 또는 Ⅱ그룹 제품 사용 가능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에 '검' 또는 'KPS' 마크가 있는 경우, 'KC' 안전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비상약품 구비 및 관리)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고,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되고 있음

(차량안전수칙 부착 및 숙지 여부(등·하원용 차량 내부))

–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차량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안전수칙에는 운전자 및 동승 교사의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차량안전 수칙 숙지 여부(차량운전자 및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 1인 면담)

- 차량안전수칙(승차 시, 운행 중, 하차 시)을 숙지하고 있는가?

## 2-3-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함 [관찰, 면담]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 동승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
  - 모니터링 당일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면담으로 확인(원장, 등하원 보육교직원 면담)
    - 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성인은 누구인가?
    -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발견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 차량 탑승 영유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영유아의 하차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가?

**컨설팅 TIP**

- 차량용 소화기의 약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차실 맨 뒷 열에 설치되어야 하며 모든 영유아의 하차여부 확인 후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함을 안내
-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영아용 보호장구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안내
- 영아용 보호장구는 마련되어 있으나,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마크 훼손으로 인증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또는 탑승하는 영아 수보다 보호장구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 차량 내 비상약품은 어린이집과 별도로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을 안내('21년 1월 시행,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기존차량은 '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 완료해야 함)

참고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방법

* 출처 : 경찰청·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경찰청·국토교통부, 2019. 4.)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 출처 :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 2점식 안전벨트 Ⓑ 3점식 안전벨트)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 2점식 벨트 → W2
   Ⓑ 3점식 벨트 → W1, W2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4) 제품 사용설명서를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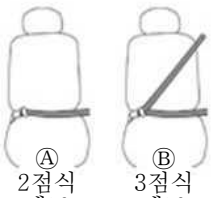

Ⓐ 2점식 벨트　Ⓑ 3점식 벨트

■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검사기준

<변경 전>

| 구 분 | 체중 범위(kg) |
|---|---|
| W1 | 10kg 미만 |
| W2 | 9kg ~ 18kg 이하 |
| W3 | 15kg ~ 25kg 이하 |
| W4 | 22kg 이상 |

<변경 후>

| 구 분 | 체중 범위(kg) |
|---|---|
| 0그룹 | 10kg 미만 |
| 0+그룹 | 13kg 미만 |
| Ⅰ그룹 | 9kg ~ 18kg 이하 |
| Ⅱ그룹 | 15kg ~ 25kg 이하 |
| Ⅲ그룹 | 22kg ~ 36kg 이하 |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 0, 0+, Ⅰ그룹)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 출처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보건복지부, 2023)

■ 운전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승차 시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⑥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하차 시**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② 기어를 주차(수동일 경우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⑦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⑧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 **동승보호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승차 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차량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⑥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⑦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2-4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② 가정에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과 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한다.

| 확인방법 | 관찰, 면담 |
|---|---|

■ 지표설명 ■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야 함. 또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12)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의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권리존중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4-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함 [관찰, 면담]**

-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장기결석 아동 인지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숙지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학대피해아동을 보았거나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 인지 및 실천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 선생님은 평소에 영유아를 어떻게 부르는가?
  - 영유아와 이야기 할 때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가?(눈높이, 자세, 억양, 목소리 크기 등)
  -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교사에게 이야기 하거나 표현하는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가?
  - 자유놀이나 바깥놀이가 끝났을 때 정리하기 싫어하거나 떼쓰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식사 시간에 특정 음식을 먹기 싫어하거나, 먹는 속도가 느린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가?
  - 낮잠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참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신고의무자의 역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방법)**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 또는 인지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에 신고(신고일원화),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 **(신고내용)**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피해(의심)아동 인적사항,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신고자 관련사항, 아동학대 의심상황, 기타사항
※ 위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시급한 경우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동법시행령 제26조) 참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직장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p.77~79.

참고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언어 폭력행위(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 ▸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아동의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 **(성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 물리적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등
- ▸ 교육적 방임(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등)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p.67~68.

## 2-4-② 가정에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과 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함 [면담]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 부모 안내 여부 확인(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을 부모에게 안내하는가?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내용을 부모에게 어떤 방법(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는가?

**컨설팅 TIP**

- 어린이집에 모든 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은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이므로 신고의무와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 및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참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 체벌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됨.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음.

■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함.

예시

-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무나" 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OO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함.
  - ▸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 시켜줌.
- "OO야, XXX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거 같구나, 어서 하렴."
  - ▸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함.

- **(나-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임.

예시

- "OO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줌.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됨.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함.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임.

예시

- 사회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 활동적 보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 물질적 보상: 아이스크림, 공,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세요.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세요.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세요.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주세요.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세요.
-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체벌은 안돼요)
-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 출처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 실천 방법]

■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개선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바람직한 상호작용 대안을 안내함으로써 보호자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훈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
| 무시 | "쪼그만게 뭘 안다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마."<br>"(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 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
| 비난<br>조롱 |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거야. OO가 자꾸 오줌 싸니까 엄마 힘들잖아."<br>"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양말 신으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거야!" |
| 거짓<br>협박 |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있게 할꺼야!"<br>"(밥 안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 보여 줄꺼야!" |
| 처벌 |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OO이는 왜 혼자 정리 못 하는 거야."<br>"너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하는 거야." |

-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관련 자료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보호자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훈육 행동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1) 보호자가 영유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아는 할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보호자에게 반항하기 위해 일부러 안 하는 것(won't)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스스로 하기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can't)임을 강조하여 안내한다.

2) 영유아 지도 시 보호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원칙에 대해 안내한다.

| | |
|---|---|
|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돼요. |
|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해보세요 | 보호자가 정해준 규칙보다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자 노력할 거예요. |
|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 훈육할 때 “경찰아저씨가 혼내줄 거야!” 등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면 훈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작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
| 그 자리에서 즉시 하세요 | 아이들은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이가 잘못한 것을 나중에 꾸짖을 경우 왜 지금 야단을 맞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훈육은 되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
| 일관성을 보여 주세요 |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오늘은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에 혼란을 느낄 거예요. |
|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하지 마세요 | 체벌 전 올바른 훈육을 위한 진정한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
| 이유를 말하지 않고 꾸짖지 마세요 |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제지하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
| 타인이 보는 앞에서 꾸짖지 마세요 | 아이의 잘못은 타인 앞에서 꾸짖으면 아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반발 심리만 강해질 수 있어요. |
|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 아이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상처만 남게 돼요. |
| 과거의 잘못은 지적하지 마세요 |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

■ **상담을 통한 훈육 지원**

-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보호자 상담 전, 사전 상담지를 통해 보호자가 보는 아이의 발달상태, 가정에서의 생활습관, 보호자의 양육태도, 양육 시 어려운 점 등을 미리 파악한다.
- 부적절한 훈육은 보호자가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와 양육 역량이 낮을 때 발생한다. 보육교직원은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가 영유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영유아에게 적절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의 조언이 보호자의 양육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태도로 상담에 임한다.
- 보호자 상담 시 주요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상담 자료는 보관한다.

| 알림장, 상담내용, 보육활동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요! |
|---|
| 교사는 영유아 관찰내용,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보호자와 소통한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자와 신뢰 관계를 맺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사 시 교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자료가 되기도 한다.<br>알림장, 상담자료, 보육일지 등 교사의 기록 자료는 보호자에 의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평소 얼마나 책임감 있게 보육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주요 증거자료가 된다. 교사가 보육활동, 보호자와의 소통 일상적 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지원**

•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및 자료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고자료 및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go.kr)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인쇄물, 동영상 소식지, 포스터, 뉴스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함

•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http://www.mogef.go.kr/kps/main.do)
 – 부모교육 매뉴얼, 동영상 등 제공
 – 자녀연령별 육아정보 제공

■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위한 지원**

• 어린이집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를 안내하여 보호자와 영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예

• 공통 부모교육
 – 클로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 자녀 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발달 이해
 –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 부모상담
• 양육서비스
 – 장난감, 도서대여서비스, 놀이실 운영, 육아정보제공 등

• 가족교육
 – 가족구성원 역량 향상 교육,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 등
• 가족상담
 – 부부 상담, 보호자 자녀 상담 등
• 가족돌봄나눔
 – 가족 단위 봉사활동
• 디양한 가족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아이돌봄지원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p.57~61.

## 영역 3 급식관리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된 식단을 토대로 영유아의 기호에 맞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식자재는 보관규정을 준수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 영 역 | 지 표 | 확인방법 | | | |
|---|---|---|---|---|---|
| | | 기록 | 관찰 | 면담 | 확인자료 |
| 3. 급식관리 (4) | 3-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충분히 제공하며,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한다. | ○ | ○ | | 식단표 (급간식 제공기록) |
| |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 | | | 식품 알레르기 조사자료, 반영여부 기록 |
| |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 ○ | | - |
| |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 | ○ | | - |

| 3-1 |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충분히 제공하며,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한다. |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한다.
④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한다.

| 확인방법 | 기록, 관찰 |
|---|---|

■ 지표설명 ■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제공하되, 재료를 구입할 수 없거나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식품군 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함. 이때는 운영일지 등에 급·간식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또한 간식은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열량 보충과 영양의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예:생과일, 샐러드, 찐감자, 군고구마 등)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장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원 기준

### 3-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함 [기록, 관찰]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확인
  - 영양사(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포함)를 사용하고 있음
    ※ 식단표에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식단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음
  -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음
- 급·간식 제공 기록 확인
  -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의 내용이 일치함
  - 급·간식 제공 기록은 운영일지, 보육일지의 급·간식 관리 기록 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확인 가능함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월의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예시 2023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4월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 3-1-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관찰]

※ 오후시간 대 모니터링으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식 제공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면담으로 모니터링 실시 가능

-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 제공 여부
  - 급·간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은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함
  - 영유아의 연령, 개별 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는 추가로 배식이 가능해야 함
    - 모니터링 당일 영유아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 또는 조리실에 추가 배식이 가능한 음식이 남아 있는지 확인

### 3-1-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함 [기록]

- 간식을 식단표대로 1일 2회(오전과 오후) 다양하게 제공하는지 확인

※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함

예시 간식으로 바나나만 일주일에 3회 제공하는 경우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는지 확인
  - 간식 제공 기록에는 제공된 과일 및 채소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철과일 등으로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주중 공휴일이 1일인 경우 주 3회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주중 공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더라도 인정

※ 급식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되지 않음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달의 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예시 2023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4월 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한 결과, 4월 1주~4주에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되었는지 확인

**컨설팅 TIP**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고 급·간식 식단표를 반드시 가정에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 토요일 운영은 언제든 영유아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토요일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토요일 식단을 수립하여 실제 영유아가 등원한 경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제공하되, 재료를 구입할 수 없거나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식품군 내에서 일부 변경하되 운영일지 등에 급·간식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당일 생일잔치 등의 행사로 인해 생일잔치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식단표상의 음식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식품 첨가물(예 :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

## 3-1-④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함 [관찰]

-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
  - 보존식 대상
    -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 (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
  - 보관방법
    -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각 150g 이상 보관 권장)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
    - 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
    - 영하 18 ℃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
    - 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

※ 제공된 급·간식(이유식 포함) 모두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

□ 근거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이하 생략 -----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Ⅱ.어린이집의 운영,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3-2 |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확인방법 | 기록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고,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급·간식의 조리나 배식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영유아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근거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및 서면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 3-2-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함 [기록]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 확인

### 3-2-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함 [기록]

-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운영일지, 보육일지, 알림장 등) 확인
  -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음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달의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예시 2023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4월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컨설팅 TIP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활용하여 기록 가능함을 안내
-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기록으로 남겨 둘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 필수기재사항: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 (대체음식 제공 등)

참고

■ 식품 알레르기 증상 및 유발 식품

• 증상

– 아토피피부염의 악화 / 피부발진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 기침과 천식 /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콧물, 코막힘) / 복부통증, 경련,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위장 증상 / 목구멍의 부종,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 맥박의 상승, 혈압강하를 동반한 쇼크 / 현기증, 머리가 어지럽거나 의식상실 / 입가나 목구멍이 가렵거나 조이는 느낌

•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 영아(만 0~24개월) | 유아(25개월~만 5세) |
|---|---|
| 계란, 우유, 땅콩, 대두, 밀 | 계란, 우유, 땅콩, 대두, 견과류, 밀 |

■ 식품 알레르기 관리

• 입소 시 부모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 지침에는 식품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대체음식 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형태까지 제한한다.

• 식품 제한에서 올 수 있는 영양적 문제를 해결한다.

– 대체 식품을 제시하여 영양을 보충해 준다.

| 알레르기 식품 | 대체 식품 |
|---|---|
| 계란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로 대체 |
| 우유 100ml | 두부, 마른 멸치 |
| 밀, 밀가루 | 쌀밥, 쌀가루, 잡곡 가루, 전분 |
| 생선 | 말린 표고버섯, 목이버섯 |
| 육류 | 달걀, 두부, 미역, 김 |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3-3 |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

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위생모, 위생복(전용 앞치마와 전용 머릿수건 등 사용가능), 위생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함. 또한 머리카락은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모와 위생복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또한 당일에 조리하여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은 폐기 처리하는 등 당일 내 모두 소비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원(조리사))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 3-3-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관찰]

※ 오후시간 대 모니터링으로 위생적인 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 관찰이 어려운 경우, 면담으로 모니터링 실시 가능

-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고,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이루어짐
  - 모든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게 이루어짐
  - 조리 중이거나 조리된 식품은 맨손으로 만지거나 취급하지 않음

- 조리 중 맛보기 할 경우 맛보기 숟가락을 별도로 사용함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의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여부 확인

-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또는 위생화)이나 덧신을 착용함
-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함

※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신구 착용 여부 확인

- 조리직원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 3-3-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함 [관찰]

※ 오후시간 대 모니터링으로 급식에 제공된 음식물 폐기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면담으로 모니터링 실시 가능

●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 전량 폐기 여부 확인

- 당일 조리된 음식을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하는지 확인
- 당일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냉장고 등)하는지 확인(전일 식단으로 확인)
- 영유아에게 배식된 음식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폐기하여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잔식)은 다시 배식하지 않고 전량 폐기함

### 컨설팅 TIP

- 조리하는 교직원의 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이 조리실에서 반드시 위생모와 위생복을 마련하여 조리실 이용 시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위생복을 착용한 채 조리실 이외의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위생복은 자주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떡, 빵 등 소비기한이 표기된 제품의 경우 일부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되 즉석 가공 식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당일 소모할 수 있도록 안내
- 김치류의 경우에는 당일 소모 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참고

■ 조리 시 유의사항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다.
• 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실시하며 용기, 도구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으며, 작업 시 맨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사용 한다.
• 조리하는 사람은 귀걸이, 반지, 시계, 팔찌 등을 착용하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고 조리할 수 없으며, 조리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의 상처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통하여 제1군 전염병, 결핵(비활동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 질환인 경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매일 조리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발열, 설사, 복통, 구토하는 경우 식중독이 우려되므로 조리작업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 전염병(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에는 완쾌될 때까지 조리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 손, 얼굴에 화농성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경우 조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 식품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하여 음식의 내부 중심 온도가 74℃ 이상이 되도록 조리한다.
• 양념은 가급적 처음 조리 시 첨가해주고 양념을 첨가한 후에는 충분히 가열하며, 음식을 자주 저어서 음식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 조리된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별도의 맛보기 스푼을 사용해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분산조리를 권장한다.

■ 개인위생을 위한 준수사항

• 조리실 내에서는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위생복장을 착용한 채로 작업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위생복을 착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식품 취급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용도별(청소용, 조리용, 배식용, 전처리용)로 장갑 및 앞치마의 색을 구분하여 세척 및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고 인조손톱 착용이나 매니큐어 칠을 하지 않으며, 로션은 세균의 번식을 도우므로 손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 **조리사가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작업 시작 전
-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
- 식품 검수, 육류, 어류, 난각 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과 접촉한 후
-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취급한 후
- 귀, 입, 코,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 음식 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은 다음 또는 차를 마시고 난 후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조리 시 올바른 복장 착용법

* 출처 : 어린이집, 유치원 식중독 예방 관리 매뉴얼 시설운영자용(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별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
②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③ 소비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을 위해 구입한 식자재는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고 식품에 표시된 보관규정에 따라 냉동·냉장·실온보관 하며,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배추 등 1차 농산물은 구입(입고)일자를 표시하여 관리함. 또한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

식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함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 어린이집 내 모든 식자재 확인대상에 포함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확인대상에 포함(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 가정어린이집에서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확인대상에 포함

### 3-4-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별 구입(입고) 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함 [관찰]

- 식자재 보관규정(냉동, 냉장, 실온 등) 준수 여부
  -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함
  - 실온(1~35℃) 보관제품의 경우 냉장보관(0~10℃)의 온도범위를 포함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여도 보관방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평정에 반영
  - 하절기에는 창고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가급적 냉장실에 보관할 것을 권장
- 식자재별 구입(입고)일자 기입 여부
  -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식자재는 입고일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자재를 소분하여 별도의 통에 담아서 사용할 경우 입고일자와 소비기한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함
  -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1차 농산물(배추 등)에 대해서는 입고일을 표기하여 관리함

※ 구입(입고)일자 표시 여부 등만 확인하며, 영수증 등 회계장부는 확인하지 않음

### 3-4-②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 식자재 보관 장소가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함

### 3-4-③ 소비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함 [관찰]

- 소비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소비기한 준수 여부 확인 시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확인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소비기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해야 함

컨설팅 TIP

- 입고한 재료의 선입, 선출을 지키고 식품 표시사항에 맞게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안내
- 바람직한 식자재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식품과 소모품을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조리실,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등 어린이집 내 모든 음식물의 소비기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정에서 별도로 가져온 영유아 간식 등의 음식물이 소비기한이 명시된 경우 등원 시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 **식자재에 따른 보관법**

| 대상 식품 | 보관법 |
|---|---|
| 육류 | • 장기간 저장할 때는 냉동보관 |
| 두부 | • 찬물에 담근 후 냉장보관 |
| 생선 | •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게 하여 냉장보관 |
| 패류 | • 내용물을 모아서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은 후 냉동·냉장 보관 |
| 달걀 | •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살모넬라 예방)<br>•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함 |
| 우유 | • 4℃ 이하로 냉장보관<br>• 개봉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
| 채소 | • 물기를 제거한 후 포장지로 싸서 냉장보관<br>• 씻지 않은 채소와 씻은 채소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 |
| 젓갈 | •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뚜껑을 잘 닫아 보관 |
| 양념류 | • 물,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 |
| 통조림 | • 개봉 후 깡통 채로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br>• 개봉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

■ 냉장·냉동실 보관

- 냉장고의 냉장온도는 5℃ 이하, 냉동온도는 -18℃ 이하로 관리하고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냉장고 전체 용량에서 70% 이하로 물품을 보관한다.
-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보관한다.
- 음식물은 뚜껑 또는 투명비닐로 씌어 밀봉하여 보관한다.
-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 등)은 냄새를 흡수시키는 식품(우유, 달걀 등)과 분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익히지 않은 날 음식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 달걀은 껍데기에 날짜가 찍힌 것으로 소비기한 내의 것을 구입한다(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2019.08.23.부터 시행)

| 보관 기준 | 해당 온도기준(℃) | 보관방법 |
|---|---|---|
| 냉장 | 0~5℃ | 냉장고 보관 |
| 냉동 | -18℃ | 냉동고 보관 |
| 상온 | 15~25℃ | 상온창고 |
| 실온 | 1~35℃ |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
| 건냉소/서늘한 곳 | 0~15℃ |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
| 습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 통풍이 잘되는 곳 | 0~15℃ |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

* '개봉 후 냉장보관'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간장 등의 장류, 케첩, 소스류 등)은 개봉 전과 개봉 후의 저장 방법을 달리합니다.

■ 상온 보관

- 식재료와 소모품(세제류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식재료는 바닥에 방치하지 않고, 바닥에서 15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한다.
- 대용량 제품의 경우 개봉하여 일부 사용한 식재료(캔, 소스 등)는 소독된 용기에 옮겨 담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영역 4 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직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위생적인 절차로 배식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리실과 조리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과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영 역 | 지 표 | 확인방법 | | | |
|---|---|---|---|---|---|
| | | 기록 | 관찰 | 면담 | 확인자료 |
| 4. 위생관리 (4) |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 ○ | ○ | - |
| |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 | ○ | | - |
| |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 | ○ | | - |
| | 4-4. 개별 영유아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개별 침구, 개별 칫솔, 양치컵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소독한다. | | ○ | | - |

##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① 조리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조리도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확인방법 | 관찰, 면담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리실 내부에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후드나 환풍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또한 조리도구의 청결을 위해 식기, 도마, 칼, 행주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4-1-① 조리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조리실의 청결·위생 관리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의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 내부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 바닥은 깨끗하고, 조리와 청소가 끝난 뒤에는 건조하게 유지됨
- 조리실 바닥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조리실 벽과 천장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조리실 설비 및 주방가전의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 내 개수대와 조리대는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개수대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식기수납장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어 청결함
- 쓰레기통(음식물 등)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조리실의 가스레인지와 주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믹서기 등의 가전제품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며, 심한 냄새가 나지 않음

(후드·환풍기, 방충망의 설치 및 작동,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의 후드는 벽의 환기구에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외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환풍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외관 및 주변이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창문 및 외부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으며 파손 없이 청결함

## 4-1-② 조리도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면담]

- 조리도구의 청결·위생 상태
  - 식기, 도마, 칼, 행주 등 조리실 비품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식기는 충분히 건조하여 보관함
-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의 구분사용 확인(조리원 면담)
  - 칼과 도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도마와 칼은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 컨설팅 TIP

- 조리실 내부 및 조리실 비품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스레인지 벽면에 기름때나 얼룩, 싱크대 하단 수납장 안, 환풍기에 거미줄이나 얼룩 등 조리실에 있는 시설 설비의 외관뿐 아니라 안쪽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안내
-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 소독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식약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칼, 도마를 육류, 어류, 채소류, 가공품, 완제품 총 5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
- 도마와 칼을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유의하도록 안내

### 참고

■ **소독의 종류 및 방법**

| 종류 | 대상 | 소독방법 |
|---|---|---|
| 열탕소독 | 행주, 식기 등 | 100℃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삶는다. |
| 건열소독 | 스텐종류의 식기 | 열소독고를 이용하여 75℃ 이상의 온도로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한다. |
| 자외선소독 | 칼, 도마, 기타식기류 | 바로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하여 30~60분 동안 소독한다. |
| 화학소독 | 채소, 과일, 작업대, 조리기기, 칼, 도마 등 | 화학소독제를 사용해 소독대상에 따라 적합한 종류와 농도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4-2 |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
|---|---|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급·배식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고,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음식을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함. 또한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 이유식 등은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함. 영유아가 사용하는 컵, 젖병, 젖꼭지 등도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4-2-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관찰]

-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 집게, 국자 등 급·배식 전용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함
- 급·배식과정의 위생 상태
  -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음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함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함

### 4-2-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함 [관찰]

- 식수(정수기)의 위생상태
  - 식수는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우유(모유), 분유 등의 관리상태
  - 영아를 위한 모유와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즉시 폐기함
  - 영아를 위한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함
- 컵, 젖병, 젖꼭지 등의 관리상태
  - 컵은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영유아 개별 컵 사용 시에는 보육교사가 수시로 청결 상태 확인하여 관리하며, 젖병과 젖꼭지는 1회 사용한 후 소독하여 관리함

**컨설팅 TIP**

- 맨손으로 음식 배식, 하나의 배식도구(집게 등)로 여러 가지 음식 배식, 하나의 가위로 여러 가지 음식을 자르거나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 배식하지 않도록 안내
- 급·간식 시,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는 경우 개별 접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 영유아가 사용하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씻어주거나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안내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게 물과 물컵을 보육실 또는 층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 **정수기 관리**

- 전용솔을 이용하여 식수 꼭지 소독
- 정수기 업체에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내부 청소 의뢰
- 정수기 주출구, 주변바닥, 용수병 등에 얼룩이나 이물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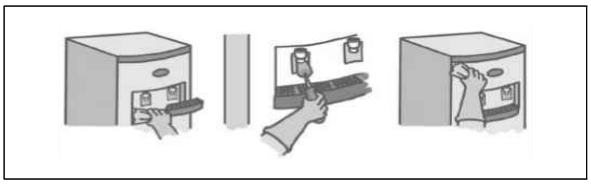

* 출처 :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 **식수, 우유 관리**

- 마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한다.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검사주기는 시·도 조례로 결정),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한다.
- 우유 등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식품은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를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다시 먹이지 않고 바로 버린다.
- 우유는 겨울철에도 반드시 냉장보관 하도록 하여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가 찬우유를 먹어 설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제공직전에 중탕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실온에 방치했다가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4-3 |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
|---|---|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은 매일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고, 현관, 복도,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 교구장, 사물함 뒤편 등의 청결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함.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영아들이 자주 물고 빠는 놀잇감의 경우 더욱 자주 세척하여 관리해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내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 및 실내공간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4-3-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함 [관찰]

- 모든 실내 공간의 청결 상태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 복도, 공동놀이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의 청결 상태 확인
  - 바닥과 벽, 천장, 기둥, 출입문과 창문 등이 청결함
  - 가구, 활동자료장, 책상과 의자, 사물함 및 뒤편 구석진 곳 등에 먼지뭉치 등 없이 청결함
  - 바닥에 깔려있는 공동매트, 쿠션 등이 찌든 때 없이 청결함
  -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이 청결함
  - 청소에 사용되는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이 청결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서 해충(바퀴벌레 등)이 발견되지 않음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상태
  -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이 건조하게 유지됨
  - 변기 사용 후 매번 신속하게 오물(대·소변)을 처리하며, 변기가 청결하게 유지됨
  - 휴지통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주고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됨
- 보육실 놀잇감(바구니 포함)의 청결 상태
  - 놀잇감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
  -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함
  - 놀잇감을 넣어두는 보관함이나 바구니가 청결함

**4-3-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 [관찰]**

- 보육실 수시 환기 여부
  - 영유아의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놀이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여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함
  -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는 경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실내 온도의 적정 수준 유지 여부
  - 필요 시 창문 개폐, 냉방기 또는 난방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
  - 보육실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지 확인

**컨설팅 TIP**

- 영아의 기저귀 갈이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에서 하고, 기저귀 갈이 전과 후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을 안내
-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특히 영아반의 경우 영아가 놀잇감을 빨거나 놀잇감에 침이 묻을 시 씻어주거나, 별도 보관해서 나중에 세척할 수 있도록 안내
- 공사장이 있거나, 황사·미세먼지 주의 예보 등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실내공기 환기 방법

■ **환기시 주의사항**

- 주변에 큰 도로나 오염 물질 배출 있을 경우에는 자연 환기에 주의하며 보조적으로 공기 정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외 미세먼지가 높지 않을 때 하루 2, 3회 30분 실시하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요리나 청소 시에는 실내농도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와 함께 레인지 후드 등을 가동합니다.

▸ 실외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smsService)를 통해 문자서비스 신청
- 스마트폰에서 우리동네 대기질 앱 다운하여 활용

* 출처 :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지침(환경부, 2019)

참고

## 어린이집의 놀잇감 관리방법

■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있는 놀잇감(플라스틱, 블록, 인형, 헝겊, 소꿉놀이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한다.
- 특히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재질에 따른 세척방법**

| 구분 | 세척방법 |
|---|---|
| 원목 및 나무 놀잇감 |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서 건조 |
| 헝겊 놀잇감 | 수시로 먼지 털고 자주 세탁 |
| 플라스틱 놀잇감 |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한 후 말림 |
| 고무 놀잇감 | 영유아용 세제 등을 이용하여 스펀지로 닦고 말림 |
| 블록 놀잇감 | 블록 표면의 먼지나 얼룩은 물수건으로 닦고 틈새는 면봉, 칫솔로 닦음 |

■ **영아(만 0~2세) 놀잇감 세척방법**

- 영아(만 0~2세)반에서 입에 넣고 빠는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한다.

## 기저귀 갈이 공간의 청결 관리방법

■ **기저귀 갈이 공간의 청결**

- 기저귀 가는 공간에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등 비품을 갖추도록 한다.
- 영아들이 이동식 기저귀 갈이대를 밟고 다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 기저귀 갈이대를 닦지 않고 소독액만 뿌려 사용하지 않는다.
- 기저귀를 갈 때마다 기저귀 갈이대를 닦고 소독한다.
  - 기저귀 갈이대 위에 종이타올 등 별도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저귀를 갈 때 마다 깔개를 교체한다.
-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즉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기저귀 가는 영아반 보육실 휴지통은 뚜껑이 반드시 덮여 있어야 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참고

## 어린이집의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법

■ **보육실**

- 환경마크 제품 사용
- 새로 구입한 교구나 매트, 장난감 등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환기하도록 함
-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손 씻기
- 공간별, 계절별 온도 차가 급격히 나지 않도록 관리
- 겨울철 18~21℃, 여름철 24~27℃, 습도 40~60% 유지
- 식사 및 간식 후 반드시 환기를 하며 주변 청결히 청소

■ **보육실(가정어린이집)**

- 이불, 베개, 매트리스, 카펫, 커튼 등은 주 1회 이상 햇볕에 약 2시간 말림
- 침구류는 1주일에 1회 이상 70℃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
- 청소 시에는 진공청소기 사용 후 물걸레를 사용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함
- 진드기제거제 같은 화학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기저귀 등 처리시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처리
- 온도 20~25℃, 습도 40~60%로 관리
- 하루 최소 2회, 30분씩 자연 환기(고농도 미세먼지 시 환기시간 1~3분)
- 채광과 조명을 적절히 관리

■ **화장실**

- 사용 후 물청소를 반드시 하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가 없도록 마른수건으로 바닥과 벽을 닦아주고 통풍시킴
- 곰팡이나 세균제거제 등의 화학제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청소와 환기를 하도록 함

■ **출입문**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를 설치하고 외부활동 후에는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옷과 신발을 털도록 함
- 실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고, 손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함

* 출처 :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지침(환경부, 2019)

| 4-4 | 개별 영유아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개별 침구, 개별 칫솔, 양치컵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소독한다. |
|---|---|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확인방법 | 관찰 |
|---|---|

■ 지표설명 ■

영유아별로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사용하며,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 일광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칫솔과 양치컵은 사용 후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칫솔 관리 시에는 영유아의 개별 칫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소독기 사용 시에는 소독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침구,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4-4-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함 [관찰]

- 개별 침구 구비 및 청결 상태
  - 낮잠을 자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구비해야 함
  - 동일한 모양과 색깔인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음
  - 놀이매트 등을 별도의 깔개 없이 침구로 사용하지 않음
  -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함

## 4-4-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함 [관찰]

- 개별 칫솔, 양치컵 구비 및 청결 상태
  - 칫솔과 양치컵은 개별 영유아별로 사용하며, 칫솔과 양치컵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구고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건조시켜 매번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칫솔과 양치컵을 보관하는 곳(바구니, 쟁반, 소독기 등)도 청결상태 확인

    ※ 영유아가 양치한 이후 바로 칫솔과 양치컵 상태를 관찰하게 될 경우 보육교사가 위생 상태를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청결상태 확인

참고

### 어린이집의 침구 관리방법

■ **개별침구(이불, 요, 베개)사용**

- 개별침구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 모든 영유아는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를 사용하고, 놀이매트 등은 침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침구의 경우 부모님에게 실로 이름을 새기도록 하여 침구의 주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아(만0세)의 경우 바닥이 단단한 요를 사용한다.

■ **개별 침구 및 보관장 관리**

-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서 주 1회 이상 세탁한다.
- 여분의 침구를 구비하고, 사용한 침구는 매회 세탁한다.
- 침구 보관장에 먼지, 오물이 없어야 한다.
- 침구와 다른 물건들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 칫솔, 양치컵 관리방법

■ **칫솔과 양치컵 관리**

-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며, 사용 후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 건조시킨다.
- 이가 나지 않은 영아에게 사용하는 가재손수건은 삶아서 사용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CHAPTER

# III

#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23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주요 변경사항

#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Ⅲ 부록 – 주요개정사항

## 1. 2023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기존(2022년) | 개선(2023년) |
|---|---|---|
| 주체 | • 현장방문 모니터링<br>–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br>– (전문가)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br>• 자체모니터링<br>– 재원 영유아 부모 | • 부모모니터링(통합)<br>– (부모)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br>* 어린이집 재원영유아 부모 중에서 구성<br>– (전문가 단원)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 위촉 |
| 모니터링 대상 |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br>1)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 포함)<br>2)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br>3)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자체모니터링 제외)<br>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br>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br>※ 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br>※ 최근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br>1)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br>2)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br>3)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br>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br>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br>※ 부모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실시 |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2년)</th><th>개선(2023년)</th></tr>
<tr><td rowspan="2"></td><td>우선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 미실시</td><td>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예산 등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td></tr>
<tr><td>•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br>※ 열린어린이집이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희망의사 전달<br>※ 하반기 열린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모니터링 제외대상 다수 발생 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차년도 제외대상에 포함 가능</td><td>• <삭제></td></tr>
<tr><td>부모모니터링단</td><td>• 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로 활동<br>※ 중간해촉이 있는 경우도 기존 단원 중 부모 및 전문가 2인 1조로 활동 가능</td><td>• 모니터링은 재원아 부모, 어린이집, 보육·보건 전문가(컨설팅)가 함께 활동<br>※ 재원아 부모는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인 이상)<br>※ 전문가 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td></tr>
<tr><td>모니터링 지표</td><td>• 지표
<table>
<tr><th>영역</th><th>현장방문 모니터링</th><th>자체모니터링</th></tr>
<tr><td>건강관리</td><td>3</td><td>2</td></tr>
<tr><td>안전관리</td><td>4</td><td>3</td></tr>
<tr><td>급식관리</td><td>4</td><td>2</td></tr>
<tr><td>위생관리</td><td>4</td><td>3</td></tr>
<tr><td>소계</td><td>15</td><td>10</td></tr>
</table></td><td>• 지표
<table>
<tr><th>영역</th><th>부모모니터링</th></tr>
<tr><td>건강관리</td><td>3</td></tr>
<tr><td>안전관리</td><td>4</td></tr>
<tr><td>급식관리</td><td>4</td></tr>
<tr><td>위생관리</td><td>4</td></tr>
<tr><td>소계</td><td>15</td></tr>
</table></td></tr>
<tr><td>실시주기</td><td>• (현장장문 모니터링) 관내 어린이집 50% 선정, 2년 1회 내외 실시<br>• (자체모니터링) 매년 1회 이상<br>* 최소 1회는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전 실시</td><td>• (부모모니터링)<br>– 모든 어린이집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br>– 전문가 단원 참여 모니터링은 연 1회 실시 (예산 및 우선 실시 기준 고려)</td></tr>
<tr><td>결과활용</td><td>• (현장방문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로 제출<br>• (자체모니터링)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컨설팅 혹은 관련 정보 제공 기초자료로 활용</td><td>• (부모모니터링)<br>–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 전체 부모 공지<br>– 전문가 단원이 참여한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로 제출</td></tr>
</table>